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 미준수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내 용

과(課)는 보조기관의 최소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 정원을 12명 미만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량과 통솔범위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정원이 12명 미만 부서(課) 운영 현황 >

자치단체	실·국	과명	정원(명)	비고
전라남도	인구정책이민국	청년희망과	11	
		이민정책과	11	
	인재육성교육국	대학정책과	11	
		의대설립추진단	8	
	자치행정국	고향사랑과	9	
목포시	기획관리국	큰목포기획단	7	
	관광문화교육국	관광거점도시추진단	10	
순천시	도시디자인국	신청사건립과	8	
광양시	-	감동시대추진단	7	
	교육보육국	교육청소년과	11	
	녹색도시국	녹지과	11	
		휴양림과	10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께서는

정원이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과에 대하여 적정한 기능을 보장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과(課) 단위 부서 명칭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실·본부’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실·국’의 명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의 부서 명칭을 확인한 결과 과장급 기구임에도 규정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과(課) 단위 부서 명칭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실·국	과명	부서장 직급	정원	비고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	의대설립추진단	4급	8명	
목포시	기획관리국	큰목포기획단	5급	7명	
	관광문화교육국	관광거점도시추진단	5급	10명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5급	12명	
광양시	-	감동시대추진단	5급	7명	
담양군	미래성장국	투자유치단	5급	13명	
고흥군	-	우주항공추진단	5급	12명	
강진군	관광체육국	축제마케팅추진단	5급	14명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5급	12명	
	안전건설국	전략사업추진단	5급	12명	
영암군	관광문화국	통합돌봄추진단	5급	12명	
	안전건설환경국	공영개발사업단	5급	14명	
영광군	-	스포츠산업단	5급	16명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고흥군수, 강진군수, 영암군수, 영광군수께서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기구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상시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기 관 명 목포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의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결과, 목포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 고흥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소위 준전담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광양시장, 곡성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을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 >

자치단체	상시운영 여부	운영형태	완전전담 운영시기 (운영 예정시기)	운영부서	전담인력수
전라남도	상시	완전전담	2013.08.01.	사회재난과	3명
목포시	상시	준전담	2025. 6월	재난안전과	-
여수시	상시	완전전담	2023.07.10.	안전총괄과	6명
순천시	상시	완전전담	2024.09.01.	안전총괄과	3명
나주시	상시	완전전담	2024.01.22.	안전재난과	6명
광양시	비상시	비상시운영	2026. 6월	안전과	-
담양군	상시	완전전담	2023.09.15.	재난안전과	4명
곡성군	비상시	비상시운영	2026. 6월	안전건설과	-
구례군	상시	완전전담	2025.02.21.	안전교통과	3명
고흥군	상시	준전담	2026. 6월	재난안전과	-
보성군	상시	준전담	2026. 12월	안전건설과	-
화순군	상시	완전전담	2025.01.15.	주민안전과	7명
장흥군	상시	준전담	2025. 12월	재난안전과	-
강진군	상시	준전담	2026. 12월	안전재난교통과	-
해남군	비상시	비상시운영	2025. 12월	안전교통과	-
영암군	비상시	비상시운영	2025. 6월	군민안전과	-
무안군	비상시	비상시운영	2025. 12월	안전총괄과	-
함평군	비상시	비상시운영	2025. 7월	안전관리과	-
영광군	상시	완전전담	2025.04.01.	안전관리과	6명
장성군	상시	완전전담	2024.04.05.	재난안전과	7명
완도군	비상시	비상시운영	2025. 7월	안전총괄과	-
진도군	상시	준전담	2025. 12월	안전생활지원과	-
신안군	상시	준전담	2026. 6월	안전총괄과	-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과장급(시·도 4급, 시·군·구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기 관 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일(25.5.2.) 현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의 과장급(시·도 4급, 시·군·구 5급) 이상 직위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점검한 결과, 정·현원 간 직렬 불일치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고흥군수, 화순군수, 강진군수, 영암군수, 함평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하여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과장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자치단체	직위	정원	현원	비고
목포시	민원봉사실장	행정·시설 5급	사회복지 5급	
	용당2동장	행정 5급	사회복지 5급	
	산정동장	행정 5급	환경 5급	
	상동장	행정·사회복지 5급	녹지 5급	
	옥암동장	행정·환경·시설 5급	보건 5급	
여수시	주차차량과장	행정·시설 5급	공업 5급	
	동문동장	행정·사회복지·간호·시설 5급	보건 5급	
	광림동장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5급	보건 5급	
	묘도동장	행정·공업·환경·방송통신 5급	시설 5급	
순천시	국가유산과장	행정·시설 5급	사서 5급	
	식품위생과장	보건·의료기술·간호 5급	행정 5급	
	상수도과장	행정·공업·환경 5급, 환경연구관	시설 5급	
	외서면장	행정·농업·녹지·시설 5급	해양수산 5급	
	별량면장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5급	공업 5급	
광양시	보건행정과장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5급	의료기술 5급	
	옥곡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5급	환경 5급	
	진월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5급	시설 5급	
담양군	용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5급	학예연구관	
곡성군	관광과장	행정·시설 5급	공업 5급	
고흥군	종합민원실장	4급·기술 4급, 행정·시설 5급	농업 5급	
	환경산림과장	행정·녹지·환경 5급	시설 5급	
	도양읍장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5급	기술 4급	
	금산면장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5급	공업 5급	
	도화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5급	환경 5급	
	포두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5급	녹지 5급	
화순군	한천면장	행정·보건·시설 5급	환경 5급	
강진군	군민행복과장	행정·사회복지 5급	보건 5급	
	작천면장	행정·농업·환경 5급	사회복지 5급	
	병영면장	행정·농업·시설 5급	사회복지 5급	
	옴천면장	행정·농업·시설 5급	녹지 5급	
영암군	의회사무과장	행정 5급	사회복지 5급	
	경제건설전문위원	행정·시설 5급	녹지 5급	
함평군	주민복지과장	행정·사회복지 5급	방송통신 5급	
	가족행복과장	행정·사회복지 5급	시설 5급	
	함평읍장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5급	4급	
	손불면장	행정·농업·해양수산 5급	사회복지 5급	
	나산면장	행정·사회복지·시설 5급	농업 5급	
	문화교육과장	행정·사회복지·시설 5급	농업 5급	
장성군	북이면	행정·농업·녹지·시설 5급	사회복지 5급	
	보건행정과장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5급	사회복지 5급	
완도군	고금면장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5급	환경 5급	
	진도개축산과장	행정·농업·수의 5급	환경 5급	
진도군	임회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5급	보건 5급	
	비금면장	행정·보건·간호·사회복지 5급	시설 5급	
신안군	비금면장	행정·보건·간호·사회복지 5급	시설 5급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위반(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기 관 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25. 5. 2.) 현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의 복수직렬에 대한 담당업무 확인 결과, 일부 자치단체는 해당 업무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책정하는 등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함평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업무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해당 복수직렬 정원을 조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직렬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목포시	감사실	행정·전산· <u>사회복지</u> 8급	행정 8급	•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행정·시설 6급, <u>학예연구사</u>	시설 6급	• 청년스타트업지식산업센터 임대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청년스타트업지식산업센터 건립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여주시	감사담당관	행정· <u>사회복지</u> 7급	행정 7급	• 공직자재산등록관리 • 예산, 회계 • 자체감사요원등
		행정· <u>사회복지</u> 7급	행정 7급	• 과 일반서무 •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 청백e시스템 운영 및 관리
	문화유산과	행정· <u>사서</u> 7급	행정 7급	• 과 일반서무 • 청사관리 및 물품 수급 관리 • 문화유산구역 통계관리
	교통과	행정· <u>세무</u> 7급	행정 7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 여객 불친절 및 <u>교통불편</u>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 여객운송종사자 자격 미준수 및 적성정밀검사 미준수자 관리
	주차차량과	행정· <u>세무</u> 8급	행정 8급	• 건설기계 사업의 등록 • 건설기계 정기검사 업무 및 정비명령 •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확인 지도점검
	도로과	행정· <u>전산·공업</u> 8급	행정 7급	• 도로행정 소송업무 추진 • 도로개설 미지급 용지 보상 • 도로개설 손실보상업무 추진
	수도행정과	행정·세무· <u>전산</u> 6급	전산 6급	• 요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요금조정계획 수립 • 상수도요금조정 조례개정 등
		행정·세무· <u>전산</u> 7급	행정 7급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경영평가 • 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배정 관리 • 수도행정과 일상경비 및 물품관리
		행정· <u>전산</u> 8급	행정 7급	• 상수도과 소관 업무 - 공사, 용역 등 계약 - 정기·수시 하자검사 계획수립및시행
		행정·세무· <u>전산</u> 8급	행정 7급	• 국·과서무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사업단 운영 종합계획수립 및시행 • 관급자제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행정· <u>전산·방송통신</u> 9급	행정 9급	• 상·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지출 •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지출업무 • 재무회계 결산업무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여주시	홍보담당관	공업· <u>전기운영·기계운영</u> 8급	공업 8급	•시정홍보 영상 촬영 및 기록 보존·관리 •방송 언론사, 부서 등 영상 제공 •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관리
	총무과	행정·세무· <u>사회복지·시설</u> 6급	행정 6급	•여주시 체육회 행정 지원
		행정· <u>전산·사서</u> 6급, <u>기록연구사</u>	행정 6급	•각종 선거 및 주민투표사무 종합관리 •시장·부시장 관련 회의 및 부재 시 업무 •주민자치 운영·지원
		행정· <u>사회복지·공업·시설</u> 7급	행정 7급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 운영 계획 수립 •상시학습 및 교육 통계 관리 •자체교육(멘토링, 워크숍, 직무교육)운영
	문화유산과	행정· <u>전산·시설</u> 8급	시설 9급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추진 •문화유산 구역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문화유산 부대시설 관리
	교통과	행정· <u>전산·공업</u> 6급	행정 6급	•운수지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운수지도·점검 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시책 홍보 및 언론보도 작성
	교통과	행정· <u>전산·공업·방송통신</u> 9급	행정 9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련 사항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관련 업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순천시	주차차량과	행정· <u>전산·공업·시설</u> 6급	행정 6급	•주·정차 의견진술, 이의신청 처리 •신속민원처리(과태료 및 단속 관련등) •특별회계 각종 지출업무(급여,수당 등)
	홍보실	행정· <u>사회복지</u> 7급	행정 7급	•보도자료(기획보도) 발굴 및 제공 •방송 및 신문 모니터, 분석 및 언론스크랩 •기자회견(정례브리핑) 운영 지원
	총무과	행정· <u>사서</u> 7급	행정 7급	•국·과 서무 •행정정보공동이용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대내·외 의전 및 행사
		행정· <u>방호</u> 7급	행정 7급	•공무원 교육훈련 성과관리 •장기교육, 5급 승진후보자 교육 •신규임용 후보자 공직 적응 및 기본교육
		행정· <u>전산</u> 8급	행정 8급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복무, 직원 후생복지업무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화합 및 소통
	자치행정과	행정· <u>사회복지</u> 6급	행정 6급	•행정구역 조정, 정부혁신 총괄 및 이행과제 •이동반 신설 및 이동반장 관리 •새마을 협의회, 자치경찰 업무
		행정· <u>사회복지·시설</u> 6급	행정 6급	•행정구역 조정 •이동반 신설 및 이동반장 관리 •새마을 협의회 관리
		행정· <u>사회복지</u> 7급	행정 7급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 •주민조례 개·폐 청구제 •도·시정 보고, 읍면동장 회의, 시민의날
		행정· <u>사회복지·보건</u> 9급	행정 9급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사업(국·도비) 추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순천시	민원행정과	행정· <u>보건·의료기술·간호</u> 8급	행정 8급	• 무인민원발급기관리 및 운영 • 가족관계 등록부 및 제적등본 발급 • 인감증명 발급
	신성장산업과	행정· <u>전산·방송통신</u> 6급	행정 6급	• 산업정책팀 업무 전반 • 미래산업국 서무 업무 • 신성장산업 분야 정부 국정과제, 기업유치
	경제진흥과	행정·사회복지· <u>시설</u> 6급	행정 6급	• 노사행정업무 전반 • 노동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추진 • 체불노임업체 청산 지도
	의회사무국	행정· <u>농업</u> 7급	행정 7급	• 의장 측사·게제사 작성 • 의장 인터뷰 자료 작성 • 언론인 브리핑에 관한 업무
	신성장산업과	행정· <u>전산·방송통신</u> 6급	행정 6급	• 산업정책팀 업무 전반 • 미래산업국 서무 업무 • 신성장산업 분야 정부 국정과제, 기업유치
나주시	기획예산실	행정· <u>의료기술</u> 6급	의료기술 6급	•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 도·시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업무 협의 • 법제행정 종합 기획
		행정· <u>환경</u> 7급	행정 7급	• 실 서무 및 예산·회계 • 시정자문위원회 • 열린 혁신 및 관내 기관간 공동체 협력
		행정· <u>전산</u> 8급	행정 8급	• 성과관리 및 주요 시정평가 추진 • 성과관리 지표 및 추진실적 관리 •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감사실	행정· <u>농업</u> 7급	행정 7급	• 물품·용역 계약심사 • 일상감사 • 계약심사 직무교육 운영
		행정· <u>농업</u> 8급	행정 8급	• 실 서무 및 예산·회계 •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 결과 처리 • 적극행정 지원
	회계과	행정· <u>전산</u> 7급	행정 7급	• 공사 계약(시민행정교통국, 미래전략산업국, 관광문화복지국)
	일자리경제과	행정· <u>사회복지</u> 7급	행정 7급	• 지역경제 활성화 • 상권 활성화, 공실 해소 • 대규모 점포 등록 관리
	안전재난과	행정· <u>녹지</u> 9급	행정 8급	•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위험성 평가 • 안전 교육
	가족아동과	행정· <u>전산</u> 7급	행정 7급	• 과 예산·회계 • 양성평등 업무 • 여성단체 지원 및 문화센터 관리
	교통행정과	행정· <u>보건·식품위생</u> 9급	행정 9급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관리 • 이륜차 등록 업무
		행정· <u>보건·식품위생</u> 9급	행정 9급	• 자동차 등록(승용, 화물, 승합, 특수) • 동원 관련 업무 • 자동차 저당 및 압류 등록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광양시	회계과	행정· <u>전산</u> 8급	행정 8급	• 물품계약 • 폐기물용역수의계약 • 물품수급관리
담양군	도시과	행정· <u>사회복지</u> 8급	시설 8급	•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건축중인 위반 건축물 등 민원처리 • 기계설비법 관련 인허가 업무
	재난안전과	행정· <u>전산</u> ·시설 7급	행정 7급	• 중대재해 예방 및 홍보 업무 •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 업무 • 중대재해 담당부서 지도 및 점검
	재난안전과	행정·시설· <u>식품위생</u> 9급	시설 9급	•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 재난관리평가, 재난안전연감
곡성군	민원실	행정· <u>전산</u> 9급	행정 9급	•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 관리 • 차량등록실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과	행정· <u>전산</u> 6급	행정 6급	• 주요 여론·동향 관리 및 의전행사 추진 •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과	행정· <u>전산</u> 8급	행정 8급	• 공무원(청경 포함) 채용 및 근로관리 • 기간제 근로자 관리 • 공무원 교육 및 상시학습
	축산정책과	행정· <u>전산</u> 8급	행정 7급	• 낙농산업 지원 • 유기무항생제지원 • 깨끗한축산농장지정
	도시경제과	행정· <u>전산</u> 9급	행정 9급	•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서무 • 통신판매업및담배소매업 • 상표관리에관한사항
	농정과	행정· <u>전산</u> ·농업 7급	농업 7급	• 농산물생산비질감, 타작물재배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등 • 전략작물산업화(두류,밀등)지원사업 • 농업재해 관련업무
구례군	기획예산실	행정· <u>사회복지</u> 6급	사회복지 7급	• 자체감사 및 공무원·공무직 징계의결 요구 • 고충민원 등 민원사항처리 •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업무
	스포츠산업과	행정· <u>전산</u> ·사회복지·보건 6급	보건 6급	• 전남체전T/F팀 업무 총괄 • 전남(장애인)체전 계획 수립 • 경기장 시설 정비 및 운영
	상하수도 사업소	행정· <u>방호</u> ·공업·시설 6급	시설 6급	• 하수도 업무 총괄 •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 지하수 개발신고 등 관리감독
	상하수도 사업소	행정· <u>방호</u> 7급	행정 7급	• 관급자재 구입 및 계약 업무 추진 • 일반 지출 처리 • 물품 관리 추진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보성군	총무과	행정· <u>사회복지</u> 7급	행정 7급	• 이반장 관리 및 지원, 읍면민의 날 • 국내외 자매결연단체 및 기관단체장협의회
	경제교통과	행정· <u>농업</u> 6급	행정 6급	• 교통행정팀 소관 총괄 지도·관리
	산림산업과	행정· <u>세무</u> 9급	행정 9급	• 철쭉문화행사 추진 • 특색있는 등산로 정비사업 • 주월산에코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순군	재무과	행정· <u>전산</u> 8급	행정 7급	• 급여관리 • 국도비재배정예산지출및결산 •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장흥군	총무과	행정· <u>전산·방송통신</u> 9급	행정 8급	•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 • 적극행정 업무 전반 • 자율방범대 업무
	재난안전과	행정· <u>농업·해양수산</u> 7급	행정 7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업무 • 여객터미널 관리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업무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	행정· <u>세무</u> 8급	행정 8급	• 동백축제 추진 • 강진 하맥축제 추진
		행정· <u>사회복지</u> 8급	행정 8급	•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 추진에 관한 사항 • 상권활성화 관한 사항 • 축제와 지역경제 연계에 관한 사항 (상가모니터링 등)
	민원봉사과	행정· <u>보건</u> 8급	시설 8급	•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사용검사 •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강진읍) • 기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
	다산박물관	행정· <u>녹지</u> 8급	행정 8급	• 공무원 청렴교육 운영 • 인재개발원 공무원 청렴교육 운영 • 공통-팀원간 교육 및 체험 업무 협조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행정· <u>사회복지·보건</u> 6급	행정 6급	• 초록민음 쇼핑몰 및 기타 플랫폼 구축 지원 및 총괄관리 • 팝업스토어 및 라이브커머스 행사 지원 • 기업 자사물 및 폐쇄물 입점 및 상품관리
해남군	관광실	행정·보건· <u>의료기술·간호</u> 8급	행정 8급	• 우수영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총괄 • 명량역사체험마당 운영 관리 • 울돌목스카이워크 시설 관리
함평군	문화체육과	행정· <u>사서</u> 9급	행정 8급	•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 추진 • 각종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 • 스포츠마케팅 관리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관리 •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장성군	교통에너지과	행정· <u>전산</u> 9급	공업 9급	• 자동차 등록·이전·말소 등 • 건설기계 등록·이전·말소 등 •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
	기획실	행정· <u>사회복지·보건</u> 8급	행정 8급	• 공직윤리(공직자 재산등록 등) •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문화교육과	행정· <u>전산·환경</u> 8급	공석	• 청렴문화 체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장성아카데미 강연집 발간 및 배부 • 장성아카데미 홍보 및 자료 관리
완도군	경제교통과	행정· <u>전산·공업·시설</u> 7급	공업 6급	• 신재생에너지 육성관련 인허가 • 전기관련 각종 사업 추진 • 군 및 마을단위 가스배관사업 추진
	체육진흥과	행정·시설· <u>전산·방송통신</u> 6급	행정 6급	• 체육정책 업무 총괄 • 완도군 체육진흥계획 수립 • 각종 체육대회 개최업무 지원
	체육진흥과	행정· <u>전산·공업·시설</u> 7급	시설 7급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 완도군 체육공원 정비사업 추진 • 체육시설사업 건의(기금, 군특)
	체육진흥과	행정· <u>전산·방송통신</u> 8급	행정 8급	• 완도군 체육회 체육업무 운영 지원 •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리 •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행정· <u>전산</u> 7급	방재안전 9급	• 자동차 터미널 지도 감독 및 운수사업보조 • 100원·바우처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 운수종사자 교육 업무 등
	세무회계과	행정· <u>전산</u> 7급	행정 7급	• 용역 계약 업무 • 물품 계약 업무 • 기타 계약 관련 업무 등
신안군	기획예산과	행정· <u>사서·공업·시설</u> 6급	시설 6급	• 군정홍보 • SNS기획 관리 • 언론사 관리 등
	민원봉사과	행정· <u>공업·농업·수의</u> 7급	농업 7급	• 농지전용 • 타용도 일시사용 인허가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되며,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16~’24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시·도로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기능,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 등을 자체 검토 후 폐지, 통폐합 또는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123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속한 정비(조례·규칙 개정 등)가 필요하다. (미흡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통폐합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3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유아숲교육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유아숲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1
	전남 뿌리산업 진흥위원회 제9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4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목포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경로당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관광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시는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9
	노사민정협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 및 목포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포시 지역의 노사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목포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목포시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 제7조(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7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목포시	슬로시티운영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요트마리나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28조(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7
	조각작품설치 심의위원회 제3조(조각작품설치심의위원회의 설치) 조각공원 내에 전시할 작품의 교체·선정 및 설치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목포시조각작품설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교육발전협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0
	도시재생위원회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21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여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1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제9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0
	지역경제협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여주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20
	지역돌봄협의체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1
순천시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민관협의회 제35조(설치) 순천시는 쓰레기 배출 감량 및 자원순환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33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제10조(구성) 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44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순천시	대학교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 제6조(의대 유치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시민주권위원회 제5조(시민주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주권 활성화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 제10조(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3
나주시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나주시를 만들기 위한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0
	나주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나주시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6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나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22
	마한사위원회 제6조(자문단의 설치) 마한역사문화자원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마한역사문화정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20
	백호임제문학상예비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백호임제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5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5
	시민배심원제심의대상결정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민원이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민민원배심원제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7
	천연염색공방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천연염색공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천연염색공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9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광양시	주거복지위원회 10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 복지 정책과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중장년정책위원회 제10조(중장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시장은 중장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각 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양시 중장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3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제36조(갈등조정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기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담양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2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담양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협의회 제9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담양군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0
	지역돌봄협의체 제15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운영위원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8
	효도택시운영위원회 제8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효도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효도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구례군	구례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구례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7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위원회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2
	산수유 보호·육성 관리위원회 제3조(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 설치) ① 산수유의 보호·육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3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1
	친환경농업육성발전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고흥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제3조(협의회 설치) 고흥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양성평등위원회 제2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제10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4
	문화정책자문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흥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자문을 위하여 고흥군 문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친환경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이용 및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 생산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8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화순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제5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화순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3
	투자유치협의회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2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7
	화순 읍·면지편찬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제4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3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0
장흥군	CCTV 운영협의회 제2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 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 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4
	생물의약산업육성발전위원회 제7조(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생물의약산업육성 발전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생물의 약산업육성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8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0
	장흥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제4조(위원회)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효과적으로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교육환경개선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장흥군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장흥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장흥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0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1
	장흥군 환경정책위원회 제12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장흥한우 육성위원회 제4조(설치) 정남진 장흥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한우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장흥군	천관문학관운영위원회 제30조(목적 및 명칭) ① 문학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강진군	노사정협의회(노사민정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내 노정현안사항의 조정·협의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2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4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2
	적조대책위원회 제6조(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적조예비특보·특보가 발표된 해당 지자체는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귀어위원회 제3조(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1
	황금목욕장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6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강진군	금강목욕장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7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3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강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8
	화물공영차고지관리운영위원회 제26조(강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위원회) 군수는 공영차고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강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7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강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8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해남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6
	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군수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6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리함에 있어 자문에 응하도록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1
	해남군농촌유학협의회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8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평가 위원회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30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무안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위원회 제5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7
	숲속의전남실무협의회 제5조(나무심기 추진협의회 구성) 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0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6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무안군	조생양파최저생산비지원운영위원회 제12조(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조생양파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5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0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1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5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5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영광군 여성농어업인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의 설치)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8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4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장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3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6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3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제11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5
	한옥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완도군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7
진도군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진도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10
	문화예술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O	7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진도군	작품수집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품의 선정 및 수집 등의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진도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0
	주소정보위원회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진도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2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제23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8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9
	노사민정협의회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신안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0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제11조(신안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6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5
	자체평가위원회 제12조(신안군자체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신안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0
	퍼플아일랜드운영위원회 제11조(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운영위원회) 군수는 퍼플 아일랜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7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영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을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등)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⑨ 자문기관 운영 현황

그러나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기구정원 운영현황 및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일부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위반사항 : 불임)

이에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기구 및 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여부 확인 >

구 분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①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1.11.02. '22.11.01. '23.11.03. '24.11.08.	'21년 미제출 '23.01.25. '24.01.03. '24.12.21.	21.10.28. 22.11.28. 23.12.01. 24.11.21.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12.30. '23.01.03. '24.01.02. '25.01.06.	'21.12.16. '22.11.15. '23.11.17. '24.11.18.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②기구 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1.11.02. '22.11.01. '23.11.03. '24.11.08.	'21년 미제출 '23.01.25. '24.01.03. '24.12.21.	21.11.25. 22.10.27. 23.12.01. 24.05.29	'21.11.25. '22.11.02. '23.04.19. '24.01.19.	'21.12.30. '23.01.03. '24.01.02. '25.01.06.	'21.12.16. '22.11.15. '23.11.17. '24.11.18.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11.03. '24.11.04.
③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미제출 '23.01.25. '24.01.03. '24.12.21.	21.10.28. 22.11.28. 23.12.01. 24. 11.21.	'25.02.19. '25.02.19. '25.02.19. '25.02.19.	'21.12.30. '23.01.03. '24.01.02. '25.01.06.	'21.12.16. '22.11.15. '23.11.17. '24.11.18.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11.03. '24.11.04.
④행정안전부 조직 진단 및 감사 결과, 자체단체 자체진단 결과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미제출 '23.01.25. '24.01.03. '24.12.21.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11.21.	'21.11.25. '22.11.03.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12.30. '23.01.03. '24.01.02. '25.01.06.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04.24. '24년 미제출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구 분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미제출 '23.01.25. '24.01.03. '24.12.21.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3.12.01.	'21.11.30. '22.11.25. '23.11.24. '24.11.22.	'21.12.30. '23.01.03. '24.01.02. '25.01.06.	'21.12.16. '22.11.15. '23.11.17. '24.11.18.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미제출 '23.01.25. '24.01.03. '24.12.21.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11.30. '22.11.25. '23.11.24. '24.11.22.	'21.12.30. '23.01.03. '24.01.02. '25.01.06.	'21.12.16. '22.11.15. '23.11.17. '24.11.18.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11.03. '24.11.04.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21.11.02. '22.11.01. '23.11.03. '24.11.08.	'21.12.30. '22.12.27. '24.01.03. '24.12.21.	'21.10.28. '22.11.28. '23.12.01. '24.11.21.	'21.01.25.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01.25.	'21.12.21. '22.12.16. '23.12.18. '24.12.16.	'21.12.16. '22.11.15. '23.11.17. '24.11.18.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⑨ 지문기관 운영현황 (가문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11.03. '24.11.08.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구 분	국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회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①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2.01.11. '24.02.16. (22년~23년 자료) '25.02.21.	'21년 미제출 '23.04.04. '24.02.02. '25.01.31.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30. '25.01.17.	'21.12.27. '22년 미제출 '24.01.17. '24.12.11.	'21년 미제출 '23.02.24. '24.01.29. '25.03.05.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29. '24.12.29.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5.03.06.	'21.12.29. '22.12.27. '23.12.20. '24.12.30.
②기구장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2.01.11. '24.02.16. (22년~23년 자료) '25.02.21.	'21년 미제출 '23.04.04. '24.02.02. '25.01.31.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30. '25.01.17.	'21.12.27. '22년 미제출 '24.01.17. '24.12.11.	'21년 미제출 '23.02.24. '24.01.29. '25.03.25.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29. '24.12.29.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5.03.06.	'21.12.29. '22.12.27. '23.12.20. '24.12.30.
③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2.01.11. '24.02.16. (22년~23년 자료) '25.02.21.	'21년 미제출 '23.04.04. '24.02.02. '25.01.31.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30. '25.01.17.	'21.12.27.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미제출 '23.02.24. '24.01.29. '25.03.25.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29. '24.12.29.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5.03.06.	'21.12.29. '22.12.27. '23.12.20. '24.12.30.
④행정안전부 조직 진단 및 감사 결과, 지체문제 지체진단 결과	'22.01.11. '24.02.16. (22년~23년 자료) '25.02.21.	'21년 미제출 '23.04.04. '24.02.02. '25.01.31.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30. '25.01.17.	'21.12.27. '22년 미제출 '24.01.17. '25.02.25.	'21년 미제출 '23.02.24. '24.01.29. '25.03.25.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29. '24.12.29.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12.29. '22.12.27. '23.12.20. '24.12.30.

구 분	국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⑤한시지구·한시정원 현황	'22.01.11. '24.02.16. (22년~23년 자료) '25.02.21.	'21년 미제출 '23.04.04. '24.02.02. '25.01.31.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30. '25.01.17.	'21.12.27.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미제출 '23.02.24. '24.01.29. '25.03.25.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29. '24.12.29.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12.29. '22.12.27. '23.12.20. '24.12.30.
⑥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22.01.11. '24.02.16. (22년~23년 자료) '25.02.21.	'21년 미제출 '23.04.04. '24.02.02. '25.01.31.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30. '25.01.17.	'21.12.27.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미제출 '23.02.24. '24.01.29. '25.03.25.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29. '24.12.29.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12.29. '22.12.27. '23.12.20. '24.12.30.
⑦자율신설지구 성과평가 결과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⑧중기기본 인력계획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12.23.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02.27.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2.19. '24.12.26.	'21.12.27. '22년 미제출 '24.01.17. '24.12.11.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29. '25.03.25.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29. '24.12.29.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5.03.06.	'21.12.29. '22.12.27. '23.12.20. '24.12.30.
⑨지문기관 운영현황 (지문)관 장내계획 및 조치 결과 등)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구 분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① 인력 제배치·효율화 계획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5.03.27.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12.28. '23.01.03. '23.12.29. '24.12.30.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년 미제출 '22.08.04. '24.05.16. '24.11.20.	'21년 미제출 '22.11.15. '24.05.28. '25.01.22.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② 기구 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5.03.27.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12.28. '23.01.03. '23.12.29. '24.12.30.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11.26. '22.12.13. '24.02.16. '25.01.15.	'21년 미제출 '22.11.15. '24.05.28. '25.01.22.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③ 기중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5.03.27.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12.28. '23.01.03. '23.12.29. '24.12.30.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11.26. '22.12.13. '24.02.16. '25.01.15.	'21년 미제출 '22.11.15. '24.05.28. '25.01.22.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④ 행정안전부 조직 진단 및 감사 결과, 지자체별 지체진단 결과	'21.12.31. '22.12.30. '23년 미제출 '24.01.23.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5.03.27.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12.28. '23.01.03. '23.12.29. '24.12.30.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11.26. '22.12.13. '24.02.16. '25.01.15.	'21년 미제출 '22.11.15. '24.05.28. '25.01.22.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구 분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⑤한시지구·한시정원 현황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5.03.27.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12.28. '23.01.03. '23.12.29. '24.12.30.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11.26. '22.12.13. '24.02.16. '25.01.15.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⑥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5.03.27.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12.28. '23.01.03. '23.12.29. '24.12.30.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4.05.28. '25.01.22.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⑦자율신설지구 성과평가 결과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⑧중기기본 인력계획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1.23. '25.04.23.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2.28. '24.12.31.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3.11. '25.03.12.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2.06. '25.03.04.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2.29. '24.12.30.	'21.11.26. '22.12.13. '24.02.16. '25.01.15.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5.28. '25.01.22.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2.16. '24.12.16.
⑨지문기관 운영현황 (지문관 장내배 및 조치 결과 등)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4.5. '24.4.15.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